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색상·모양 표시제
폐지 및 앞면 표시제 도입〉

■ 이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99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색상·모양 표시제 폐지 및 앞면 표시제 도입	3

I. 개요

1. 이재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29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재정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2. 20.
- (3) 회 부 일 : 2025. 2. 21.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과잉 섭취의 우려가 높은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을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신호등 방식으로 표기하게 함.

이러한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제도(신호등표시제)’의 도입 취지는 소비자가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런데 신호등 색깔로 식품을 판별하는 것은 알아보는 것은 쉬운 반면 명확한 정보 파악에는 한계가 있고 도리어 색깔에만 의존하면 몸에 좋은 식품도 나쁜 식품으로 오해하는 등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예를 들어 치즈는, 원료 특성상 갖고 있는 지방과 나트륨 성분 때문에 적색 신호등 표시를 하게 돼 어린이들에게 몸에 좋은 식품임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음.

이에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상세한 영양 정보를 전달하는 영양 성분
앞면 표시제를 실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필요한 영양정보를 올바르
게 이해하고 건강한 식생활습관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포화지방, 나트
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을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앞면에 표시하도
록 식품 제조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음(안 제12조제1항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제 폐지 및 앞면 표시제 도입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제를 폐지하고 앞면 표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들어 있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糖), 나트륨 등 <u>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이하 “색상·모양 표시”라 한다)</u> 하도록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 ① ----- ----- ----- ----- ----- <u>영양성분</u> <u>의 함량을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앞면에 표시(이하 “영양성분 앞면 표시”라 한다)</u> ----- ----- -----.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	② -----

전처장이 <u>색상·모양</u> 표시를 <u>하게 하는 경우 원형 등의 모</u> <u>양에</u> 어린이 기호식품이 함유 하고 있는 각각의 해당 영양성 분이 하루 권장 섭취량에서 차 지하는 비율을 명기하도록 하 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u>색상</u> <u>·모양</u> 표시를 위하여 표시방 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 다.	-----<u>영양성분 앞면</u> 표시를 <u>하게 하는 경우</u>----- ----- ----- ----- ----- ----- -----. ③ -----<u>영양</u> <u>성분 앞면</u>----- ----- -----.
--	---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조제2호¹⁾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²⁾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12조³⁾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총리령⁴⁾으로 정하는 식품에 들어있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糖),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어린이 기호식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은 별표 1과 같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제2조 관련)

1. 가공식품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다음 각 목의 식품

가.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 및 캔디류

나. 빵류

다. 초콜릿류

라.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및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

마. 어육가공품류 중 어육소시지

바.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사.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및 혼합음료. 다만,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는 제외한다.

아.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및 샌드위치

자. 빙과류 중 빙과 및 아이스크림류

2. 조리식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다음 각 목의 식품

가. 제과·제빵류

나. 아이스크림류

다. 햄버거, 피자

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들어 있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糖),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이하 “색상·모양 표시”라 한다)하도록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이하 “색상·모양 표시”라 함)하도록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색상·모양 표시를 하게 하는 경우 원형 등의 모양에 어린이 기호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각각의 해당 영양성분이 하루 권장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명기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색상·모양 표시를 위하여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4조⁵⁾에서는 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색상·모양 표시기준 및 방법을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데,

[별표 2]에 따르면, 표시대상 식품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식품이고 표시대상 영양성분은 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이며, 영양성분 함량에 따른 등급별 색상 기준은 낮음이 ‘녹색’, 보통이 ‘황색’, 높음이 ‘적색’으로,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른 모양 표시는 3개의 도안 중 1개를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제(일명 신호등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음.

제9조의2(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 대상 식품)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가공식품을 말한다. 다만, 영 별표 1 제1호라목의 경우 원유 함량이 82.5% 이상인 식품은 제외한다.

5)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4조(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기준 및 방법) 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색상·모양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표시제 개요

- 당, 나트륨 등 건강위해가능 영양성분을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신호등 색깔로 표시하여 어린이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도입('11.3월~)

< 표시 성분 및 대상 식품 >

표시성분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식품	비고
포화지방, 지방, 당류, 나트륨	과자(한과류 제외), 빵류, 초콜릿류,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및 발효유 제외), 어육소시 지, 과·채주스, 아이스크림류	간식용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유탕면류 및 국수,	식사대용
당류	캔디류, 빙과류, 발효유,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간식용

< 표시 기준 및 방법 >

- 제품에 함유된 4가지 영양성분(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의 '1회 제공량'당 함량을 제품 주 표시면에 표기

(1회 제공량당 영양성분 함량)

등급	색상	포화지방	지방	당류	나트륨
낮음	녹색	1.5g 미만	3g 미만	3g 미만	120mg 미만
보통	황색	1.5~4g	3~9g	3~17g	120~300mg
높음	적색	4g 초과	9g 초과	17g 초과	300mg 초과

※ 식사대용으로 섭취할 수 있는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유탕면류 및 국수는 지방 12g초과, 나트륨 600mg 초과를 '높음' 기준으로 적용

- 영양성분 함량에 따른 모양 표시는 다음 도안 중 한 개를 선택 표시

도안 1	 단,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을 제외한 손바닥 도안 및 문구는 생략이 가능하다	
도안 2		
도안 3		

□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표시제는 법률 제9694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2009.5.21. 개정)로 도입되어 2011년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

도입 당시 제안이유⁶⁾를 살펴보면, 어린이 기호식품을 총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의 함량 및 열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모양으로 표시하여 어린이들이 우수한 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

□ 그런데, 이처럼 신호등 색깔로 식품을 판별하도록 하는 것은 알아보는 쉬운 반면 명확한 정보 파악에는 한계가 있고, 도리어 색깔에만 의존하면 몸에 좋은 식품도 나쁜 식품으로 오해하는 등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신호등표시제를 폐지하고 영양성분의 함량을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앞면에 표시(이하 “영양성분 앞면 표시”라 함)하도록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신호등표시제와 관련하여, 도입 당시 개정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모든 영양소의 함량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영양부족식품에는 적색 신호등이 표시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영양도가 낮은 식품이 좋은 식품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치즈는 지방과 나트륨이 각각 적색 신호등 표시대상이므로 발육기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영양 음식이 나쁜 음식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신호등표시제’를 반대하였음.

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0650호)

□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표시제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2015년에는 6개사(31개 품목)가 동 제도에 참여하였으나, 2019년 3개사(11개 품목), 2021년 2개사(5개 품목)로 점점 참여업체 및 참여 품목이 감소하였으며, 2023년 이후로는 참여업체 및 참여 품목이 없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⁷⁾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표시제’를 폐지하고 ‘영양성분 앞면 표시제’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 ‘신호등표시제’ 대상이 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⁹⁾에 따른 영양성분의 명칭, 함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7) [참고] 연도별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표시 참여업체 현황

8)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영양표시) ① 식품등(기구 및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영양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성분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양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9)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영양표시)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란 별표 4의 식품등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영양성분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열량

2. 나트륨

3. 탄수화물

4. 당류[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單糖類)와 이당류(二糖類)를 말한다. 다만, 캡슐·정제·환·분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5. 지방

6. 트랜스지방(Trans Fat)

7. 포화지방(Saturated Fat)

8. 콜레스테롤(Cholesterol)

9. 단백질

10.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

③ 제2항에 따른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영양성분의 명칭

2. 영양성분의 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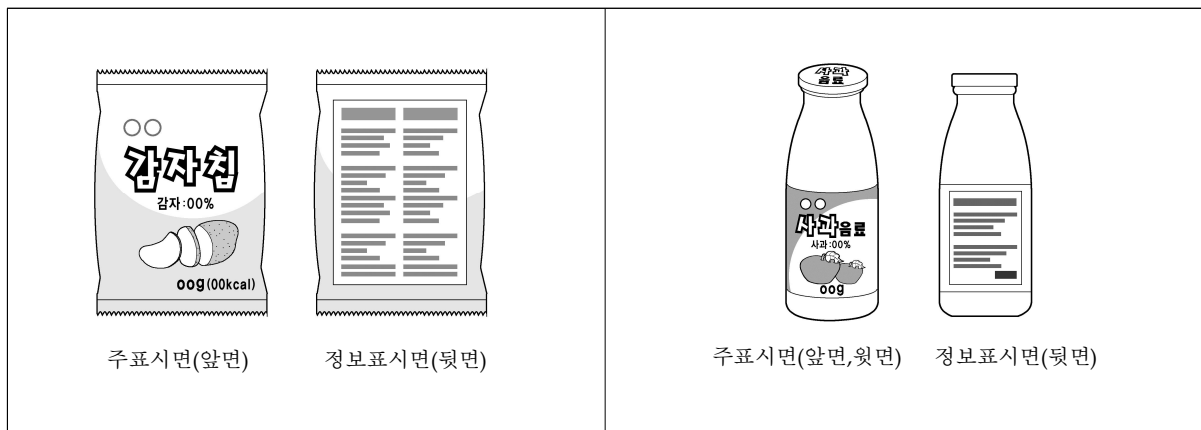
3.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④ 제2항에 따른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에는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해야 하며, 글씨크기·표시장소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양성분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고시) 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 기준¹⁰⁾에 따르면, 영양성분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도 3 표시서식도안을 사용하여 표시하도록 하되, 영양성분을 주표시면(앞면)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도 4 표시서식도안을 사용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용기·포장의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 구분 >



10) 「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아. 영양성분등

1) 영양성분 표시단위 기준

(생 략)

2) 표시방법

가) 공통사항

(1)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은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및 단백질에 대하여 그 명칭, 함량 및 규칙 제6조 관련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열량, 트랜스지방에 대하여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를 제외한다.

(2) ~ (4) (생 략)

(5) 영양성분 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도 3 표시서식도안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가) 중량(g) 또는 용량(ml)을 표시함에 있어 10g(ml) 미만은 그 값에 가까운 0.1g(ml) 단위로, 10g(ml) 이상은 그 값에 가까운 1g(ml)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6) 영양성분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도 4 표시서식도안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가) ~ (나) (생 략)

(다) 주표시면에 도 4를 표시한 경우에는 정보표시면의 영양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도 4] 영양성분 주표시면 표시서식도안 >

1. 총내용량당

총 내용량 00g(ml)당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000 kcal	00% 00mg	00% 00g	00% 00g	00% 00g	00g	00% 00g	00% 00mg	00% 00g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100g(ml)당

100g(ml)당/총 내용량 00g(ml)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000 kcal	00% 00mg	00% 00g	00% 00g	00% 00g	00g	00% 00g	00% 00mg	00% 00g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단위내용량당

1조각(00g)당/총 내용량 00g(00g×0조각)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000 kcal	00% 00mg	00% 00g	00% 00g	00% 00g	00g	00% 00g	00% 00mg	00% 00g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즉, 현재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의 함량 표시는 영업자가 원할 경우 정보표시면(뒷면) 뿐만 아니라 주표시면(앞면)에 표시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 기호식품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함량을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앞면에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 부처 및 단체 등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비자의 영양성분 정보 인식이 쉽도록 앞면 표시로 전환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의무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영업자가 원할 경우 앞면 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 및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 한국식품산업협회:

- 현행 표시방법으로도 소비자에게 영양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은 제품 크기가 작은 품목이 많아 앞면 표시를 위한 면적이 협소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3

참고

연도별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표시제 참여업체 현황

○ 2015년 기준, 6개사 31개 제품

연 번	업 체 명	식 품 유 형	제 품 명
1	매 일 유 업 (주)	과 자	맘마밀 요미요미 유기농쌀과자 빨강
2			맘마밀 요미요미 유기농쌀과자 노랑
3			맘마밀 요미요미 유기농쌀과자 초록
4			맘마밀 요미요미 유기농쌀과자 빨강
5			맘마밀 요미요미 유기농쌀과자 노랑
6			맘마밀 요미요미 유기농쌀과자 초록
7	일 동 후 디 스		아기밀 남남유기농 쌀과자(백미)
8			아기밀 남남 유기농 쌀과자(백미두부)
9			아기밀 남남 유기농 쌀과자(백미파래)
10	풀무원	빵류	올바른 핫도그
11	CU(BGF푸드)	즉석섭취식품(삼각김밥)	양념숯불갈비맛삼각김밥
12			통햄구이참치마요삼각김밥
13			통햄구이김치삼각김밥
14			NEW참치마요네즈삼각김밥
15			NEW양념돈까스삼각김밥
16			NEW소고기 고추장삼각김밥
17			통햄참치마요김치삼각김밥
18			참치마요네즈삼각김밥
19			NEW전주비빔삼각김밥
20			알래스카연어삼각김밥
21			매콤불고기삼각김밥
22			베이컨참치마요삼각김밥
23			통스팸구이삼각김밥
24			비빔참치마요삼각김밥
25			참치김치볶음삼각김밥
26			Ball숯불맛불고기주먹밥
27			Ball비빔햄참치주먹밥
28	즉석섭취식품(샌드위치)	살라미햄&토마토 샌드위치	
29		CU(샌드팜)	후라이드에그샌드위치
30			스파이시치킨&에그샌드위치
31	조아제약	혼합음료	잘크톤

○ 2019년 기준, 3개사 11개 제품

연 번	업 체 명	식 품 유 형	제 품 명
1	조아제약	혼합음료	잘크톤
2			잘크톤엠
3			잘크톤포르테
4	일동후디스	과자	유기농 쌀과자(백미)
5			유기농 쌀과자(백미+파래)
6			유기농 쌀과자(백미+두부)
7	도올바이오푸드 영농조합법인		유기농리얼코코아볼
8			유기농메이플콘푸레이크
9			유기농포시즌후르츠믹스
10			new아몬드콘푸레이크
11			유기농통곡물블랙푸레이크

○ 2021년 기준, 2개사 5개 제품

연 번	업 체 명	식 품 유 형	제 품 명
1	조아제약	혼합음료	잘크톤
2			잘크톤엠
3			잘크톤포르테
4	도올바이오푸드 영농조합법인	과자	유기농리얼코코아볼
5			유기농통곡물블랙푸레이크